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4(수) 10:00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93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금천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 및 금천구청과의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구청장이 금천문화재단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천문화재단 예산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사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정비
(안 제14조제2항)
- 나. 구청장의 금천문화재단 결산서 의회 제출 신설(안 제17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1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8. 23. ~ 2024. 8. 30.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금천문화재단 사무 위탁에 있어 구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재단 결산서를 제출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1)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위탁 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정비

(안 제14조제2항)

- 구청장의 사무 위탁에 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2) 구청장의 금천문화재단 결산서 의회 제출 신설(안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구청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은 구의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문화재단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봄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금천문화재단의 사무 위탁 및 결산에 관하여 구의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